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93 발의연월일: 2024. 8 26.

발 의 자:김선교・이헌승・김예지

김소희 • 구자근 • 윤상현

박수민 • 김성원 • 송석준

김석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·액비, 고체연료, 정화처리,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, 가축분뇨를 퇴비·액비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음. 또한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상 재활용의 정의를 「폐기물관리법」과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보다 협의로 적용함으로써, 퇴비·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 및 확대에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'가축분바이오차'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,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조제4호의3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3. "가축분바이오차"란 가축분뇨를 열분해하여 제조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.

제27조제1항 본문 중 "액비로"를 "액비, 가축분뇨고체연료, 가축분바이 오차 및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4의2. (생 략) 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4의3. "가축분바이오차"란 가축 분뇨를 열분해하여 제조한 물 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. 5. ~ 10. (생략) 5. ~ 10. (현행과 같음) 제27조(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제27조(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)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) ① -----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 (퇴비 또는 <u>액비로</u> 만드는 것 -----액비. 가축분뇨고체연 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료, 가축분바이오차 및 기타 농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 수집 · 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. 다만, 제11조제1항 또 는 제3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

"가축분뇨처리업자"라 한다)가	
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	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	,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